

발간등록번호
11-1471000-000517-01

민원인 안내서 등록번호
안내서-1270-01

국민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2023.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_____)	
	<input type="checkbox"/>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외국 규정을 단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안내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input type="checkbox"/> 예(※지침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안내서)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타 확인사항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2023 년 2 월

담당자
확 인(부서장)

문 지 혜
최 중 동

이 안내서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에 관한 판매업자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요건 및 자율관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2년 12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1912, 1903, 1943

팩스번호: 043-719-1900

제·개정 이력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

연번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1	안내서-1270-01	2023.2.13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에 관한 판매업자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요건 및 자율관리에 대하여 알기쉽게 설명 등

제1장 총 칙	1
I. 목적	1
II. 용어의 정의	1
III.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3
IV.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적용	3
제2장 사업자 요건	4
I. 사업자등록	4
1. 규정	4
2. 판매업자의 의무	4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4
II. 통신판매업 신고	5
1. 규정	5
2. 판매업자의 의무	5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5
III. 식품·의약품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신고	6
1. 규정	6
1.1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6
1.2 축산물	6
1.3 건강기능식품	7
1.4 의료기기	7
2. 판매업자의 의무	8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8

제3장 판매금지 식품·의약품등

9

1.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	9
1.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9
1.2 축산물	11
1.3 건강기능식품	11
1.4 의약품	12
1.5 마약류	12
1.6 화장품	12
1.7 의약외품	14
1.8 의료기기	14
2. 판매업자의 의무	15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15

제4장 식품·의약품등에 관한 정보의 등록

16

1. 규정	16
1.1 식품(농·수·축산물)	16
1.2 가공식품	17
1.3 건강기능식품	17
1.4 기타 식품(1.1 ~ 1.3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해당 사항에 한함)	18
1.5 주방용품	18
1.6 기구 또는 용기(주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 사항에 한함)	19
1.7 화장품	19
1.8 의약외품	20
1.9 의료기기	20
1.10 위생용품	20
2. 판매업자의 의무	21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22

제5장 부당광고 금지 **23**

I. 일반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23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3
2. 기만적인 표시·광고	27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28
4. 비방적인 표시·광고	29
II. 품목별 부당광고 내용	30
1.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30
2. 화장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34
3. 의약외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36
4.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37
5. 위생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38
III.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40
1. 판매업자의 의무	40
2.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41

제6장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42**

I. 판매업자의 자율관리	42
1. 모니터링	42
2.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44
II.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45
1. 모니터링	45
2.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사항	46

[부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48
--	----

제1장 총 칙

I | 목적

-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사항 및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II | 용어의 정의

-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각 품목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① “식품·의약품등”이란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을 말한다.
 - ② “광고”의 정의는 각 품목에 대한 적용되는 법령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른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0호: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화장품법」 제2조(정의)제9호: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5조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제1항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에 따른 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 “광고”란 사업자들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판매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오픈마켓 운영사업자)
 -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을 다른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개인간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 ㉢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의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공간의 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격비교사이트 운영사업자)
 - ㉣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 등에게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을 판매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SNS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블로그 운영사업자 등)
 - ㉤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 등에게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④ “관련 법령”이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안전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 관리법」등을 말한다.

Ⅲ |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Ⅳ |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적용

-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어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 할 경우 판매업자는 제·개정된 법령을 따른다.

제2장 사업자 요건

I | 사업자등록

1. 규정

-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2. 판매업자의 의무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 판매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의약품, 마약류는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 등은 별개이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 판매업자가 복수의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 판매할 경우에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신고 등을 각기 별도로 하여야 한다.
 - 판매업자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 식품판매업 신고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지체없이 거부 또는 승낙 유보 사유를 그 판매업자에게 통지한다.

- 판매회원 가입에 대해 거부되거나 승낙이 유보된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판매회원 가입을 재신청한 경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회원 가입을 승낙한다. 다만, 승낙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 통신판매업 신고

1. 규정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주된 사무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업자의 의무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주된 사무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판매업자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이용중지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중지를 해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 식품·의약품등 법령에 따른 판매업신고

1. 규정

1.1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 대상자: 국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려는 자
- 영업등록: 영업소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영업자 교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위생교육)).

1.2 축산물

- 대상자: 축산물(식육, 포장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려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영업신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 ✓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 ✓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영업자 교육: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축산물 위생에 관한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제2항).

1.3 건강기능식품

- 대상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
- 영업신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 영업자 교육: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제2항).

1.4 의료기기

- 대상자: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①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②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 ③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④ 콘돔,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전자체온계, 귀 적외선 체온계, 피부 적외선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 및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색조표시식체온계를 판매하는 경우
- 영업신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임대업 신고(「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2. 판매업자의 의무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하여 수입하려는 자, 축산물(식육, 포장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려는 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을 신고(등록)하여야 한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는 자는 영업을 신고(등록)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국내 소비자 요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하여 수입하려는 자, 축산물(식육, 포장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려는 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려는 자가 영업(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수입식품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식육, 포장육, 식용란 등) 또는 의료기기를 등록하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판매업자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을 거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판매업자가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고, 그 사실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그 이용을 승인하거나 그 중지를 지체없이 해제한다. 다만, 해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판매금지 식품·의약품등

1.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

1.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 ①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②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③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④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⑤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⑥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⑦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⑧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 ⑨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
- ⑩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 ⑪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 ⑫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금지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 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및 이를 제조·가공한 것
- 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 및 이를 제조·가공한 것
- ⑮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및 이를 제조·가공한 것
- ⑯ 「식품위생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 ⑰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한 경우.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이나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등(예시: 눈알, 손가락 모양 젤리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 ⑲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 ⑳ 주류[「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업자) 제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14호](요약)

- 대상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통신판매업자(음식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의 경우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로 판매할 수 있다.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는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주류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축산물

- ①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②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 ③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 ④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⑤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 ⑧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 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 ⑩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축산물

1.3. 건강기능식품

- ①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②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④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 ⑥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⑦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
- ⑧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⑨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 ⑩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1.4. 의약품

-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를 금지한다.

1.5. 마약류

-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를 금지한다.

1.6. 화장품

- ①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 ②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 ③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 ④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 ⑤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 ⑥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 ⑦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 ⑧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 ⑨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 ⑩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⑪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화장품법」 제8조 제2항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 ⑫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
- ⑬ 「화장품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 ⑭ 「화장품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
- ⑮ 「화장품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 ⑯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 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 ⑰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
- ⑱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화장품. 다만,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화장품법」 제2조 제3호의2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1.7. 의약외품

- ① 「약사법」 제65조에 따른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약외품
- ② 「약사법」 제65조의2에 따른 외부 포장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약외품
- ③ 「약사법」 제65조의3에 따른 첨부 문서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약외품
- ④ 「약사법」 제65조의4에 따른 기재상의 주의를 위반한 의약외품
- ⑤ 「약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외품

1.8. 의료기기

-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합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한 의료기기
- ②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
- ③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 제2항·제6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 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안경 및 콘택트렌즈
- ⑤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하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물질 또는 변질되거나 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
- ⑥ 그 밖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기법」 제34조 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폐기·사용중지·허가취소 등을 명한 의료기기

2. 판매업자의 의무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판매금지 식품·의약품등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 판매업자는 판매하려는 제품이 제3장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에 해당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판매금지 제품인 경우, 판매를 즉시 중단한다.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판매업자가 제3장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에 관한 판매정보를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그 정보를 즉시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하고,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다만, 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에 관한 고지를 받은 판매업자는 해당 정보가 판매금지 품목에 대한 판매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공개 또는 복구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에 지체없이 그 정보를 공개한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제3장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식품·의약품등에 관한 정보의 등록

1. 규정

-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①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②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1.1 식품(농·수·축산물)

- ① 품목 또는 명칭
- ②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 ③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 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⑥ 세부 품목군별 표시사항
 - ㉠ 농수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 ㉡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1++ 등급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라 근내지방도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 ㉢ 수입 농수축산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⑦ 상품구성
- ⑧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⑨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부록 참조]
- ⑩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1.2. 가공식품

-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 제품명
 - ㉡ 식품의 유형
 - ㉢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 원재료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및 함량(원재료 함량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 ㉦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 ㉧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부록 참조]
- ②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③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1.3. 건강기능식품

-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 제품명
 - ㉡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 원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 ㉥ 영양정보
 - ㉦ 기능정보
 -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부록 참조]

-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해당 경우에 한함)
- ③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④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1.4. 기타 식품(1.1 ~ 1.3에 해당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해당 사항에 한함)

- ① 품목 또는 명칭
- ②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 ③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④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 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⑥ 세부 품목군별 표시사항
 - ㉠ 농수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 ㉡ 축 산 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1++ 등급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라 근내지방도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 ㉢ 수입 농수축산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⑦ 상품구성
- ⑧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⑨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부록 참조]
- ⑩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1.5. 주방용품

- ① 품명 및 모델명
- ② 재질
- ③ 구성품
- ④ 크기

- ⑤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⑥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⑦ 제조국
- ⑧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⑨ 품질보증기준
- ⑩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 기구 또는 용기(주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 사항에 한함)

- ① 품명 및 모델명
- ② 재질
- ③ 구성품
- ④ 크기
- ⑤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⑥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⑦ 제조국
- ⑧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 ⑨ 품질보증기준
- ⑩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화장품

- ①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②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 ③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
- ④ 사용방법

- ⑤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⑥ 제조국
- ⑦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⑧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품 등)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의 문구
-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⑩ 품질보증기준
- ⑪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1.8. 의약외품

- ① 품명 및 모델명
- ② 법에 의한 인증·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 ③ 제조국 또는 원산지
- ④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⑤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1.9. 의료기기

- ① 품목 및 모델명
- ② 의료기기법상 허가·인증·신고 번호(허가·인증·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자율심의필 유무
- ③ 제조국
- ④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시(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⑤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1.10. 위생용품

- ① 품명 및 모델명
- ② 법에 의한 인증·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 ③ 제조국 또는 원산지
- ④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⑤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 판매업자의 의무

■ 판매업자는 품목별 분류에 따라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다.

- ㉠ 판매업자가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해당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소비)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소비)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 ㉣ 보유한 동일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소비)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 ㉢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 필 유무는 인증을 받은 경우 KC마크 또는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의 정보를 등록할 때 등록하여야 할 정보를 누락한 경우에 그 추가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추가등록을 할 때까지 그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판매업자가 그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개한다. 다만,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부당광고 금지

I | 일반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위 소관 법률)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사업자 자신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가격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시가를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원재료, 성분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②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③ 실제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④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⑤ 부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①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②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③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④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⑤ 특히 등록 자체가 상품의 성능·효능이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특히 등록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능·효능의 우수성 또는 안전성 등을 광고하는 경우

▶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①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②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③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①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광고함으로써 그 표시·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 국가의 언어나 문자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제품이 국산품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 국가의 상표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체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체는 국내에서 제조·조립 또는 가공되었어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그 해당 국가인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광고함으로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⑥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⑦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보증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추천, 권장 등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 ①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② 해당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③ 해당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해당 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④ 참가상 또는 순변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⑤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⑥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당 수상자가 생산, 조립, 가공, 제작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 등의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의 오인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지 않는 행위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제조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 상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정보,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사용방법·유효기간·보증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한 것을 말한다.
- ▶ 제조자·판매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제조자·판매자·가공업자·중간유통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 제품의 품질·종류·수량·원산지(재배지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제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은폐 또는 누락**
 -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
 -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효과(효능) 등을 거두거나 성능·기준 등을 달성할 수 있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제품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제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교대상에 관한 사항**

- 비교대상인 상품이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비교대상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표시·광고 하였으나, 실제 비교대상인 제품이 가격·품질·성능·소비자인지도 등에 있어 경쟁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표시·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여 비교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비교방법에 관한 사항**

- 특정항목, 특정조건 등에서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시험·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 시험·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자기의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II | 품목별 부당광고 내용

1.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광고

1.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1.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 다. 특수영양식품(영아·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임산부·수유부·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광고

1.4. 거짓·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
 -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등) 및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및 제20조(수입 신고 등)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광고

마.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1.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광고
-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광고
-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1.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광고

1.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1.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1.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2. 화장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2.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별론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2.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아.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3. 의약외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기]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3.1. 공통사항

- 가. 의약품등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 나.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것
- 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3.2. 의약외품

- 가.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시 규모·인력·생산시설·수상경력·사업계획·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 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다.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 라.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마.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 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4.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기]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 4.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 4.2.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 4.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 4.4.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 4.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 4.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4.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 4.9.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 4.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4.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 4.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 4.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 4.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 4.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 4.16.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 4.17. 「의료기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4.18. 「의료기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5. 위생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허위·과대·비방·표시·광고의 범위)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는 용기·포장,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위생용품의 명칭·제조방법·품질·원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및 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나. 해당 위생용품의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다.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라.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나.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다.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광고
- 마.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화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화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 2)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 3)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5.3.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 나.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원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Ⅲ |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1. 판매업자의 의무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제5장 부당광고 금지 I. 일반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II 품목별 부당광고 내용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의료기기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율 심의 기구 (현재 식약처등록 기관·단체)

- 건강기능식품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 한국식품산업협회
-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광고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및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예시>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부당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질병예방·치료효능표방광고:영업정지2개월, 의약품표방광고: 영업정지1개월, (벌칙) 10년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에 대해 부당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2개월부터 12개월,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화장품 판매업자가 화장품에 대해 부당 광고한 경우:
(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의약외품 판매업자가 의약외품에 대해 부당 광고한 경우:
(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기에 대해 부당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판매업무정지 7일부터 6개월,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 판매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등을 할 때까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한다.
- 판매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등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그 제품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개한다. 다만,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판매업자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I | 판매업자의 자율관리

1. 모니터링

-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의약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시로 확인한다.
 - ① 제3장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식품·의약품등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제4장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의 품목 정보에 맞게 표시·광고하여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상품 고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③ 제5장에 따라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식품·의약품등(의약품·마약류 제외)의 광고 게시물이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판매업자는 다음의 누리집을 통해 식품(수입식품 포함)·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제품 인·허가 등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식·의약 허위·과대광고 ✓ 식품 안전 > 건강기능식품 검색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 위해예방>위반식품 업체정보>회수 판매 중지
- ✓ 위해예방>위반식품 업체정보>수입식품 부적합
- ✓ 위해예방>위반식품 업체정보>국내식품 부적합
- ✓ 위해예방>위반식품 업체정보>행정처분
- ✓ 위해예방>해외직구 정보>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 위해예방>해외직구 정보>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 위해예방>해외직구 정보>해외직구식품안전정보
- ✓ 위해예방>해외직구 정보>위해식품 정보
- ✓ 전문정보>업체제품검색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 ✓ 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
- ✓ 안전정보>회수판매중지
- ✓ 안전정보>행정처분
- ✓ 안전정보>제품 및 업체검색>수입식품조회
- ✓ 안전정보>수입검사관련정보>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
- ✓ 알림자료>위생용품>위생용품위해정보>압류/폐기
- ✓ 알림자료>위생용품>위생용품위해정보>영업정지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의약품 등 정보 검색
- ✓ 의약품 등 정보 검색>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의약품 등 정보 검색
- ✓ 의약품 등 정보 검색>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등 제품 정보 검색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

- ✓ 정보마당>제품정보방>업체/제품 정보 검색

2.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검색 키워드를 등록하는 경우, 질병명칭 및 의약품 명칭 등을 사용하여 등록하지 않는다(예시- (표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금치어 목록).
-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광고내용 수정 및 판매 중단 등을 조치한다.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조치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다만, 개선조치 등 요청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신청 할 수 있다(구체적인 절차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내부 규정을 따른다).
- 판매업자는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표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금치어 목록 (2022.12.31.기준)

구분	금치어
질병명칭	암, 림프종, 간염, 간질환, 간섬유증, 간경화증, 결핵, 백혈병, 골수섬유증, 대상포진, 고혈압, 패혈증, 통풍, 수면장애, 불면증, 호흡부전,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폐질환, 폐부종, 폐렴, 호흡기질환, 뇌병증, 뇌경색증, 뇌내출혈, 뇌혈관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치매, 섬망, 파킨슨병, 위염, 장염(크론), 궤양(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망막병증, 녹내장, 백내장, 수정체(기타) 장애, 신장병, 신부전, 요실금, 심근경색증,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심장병, 정맥염, 협심증, 관절염, 하지정맥, 고지혈증, 질염, 비염, 장염, 오십견, 비만, 부종
의약품명칭	인사돌, 이가탄, 우루사, 가네진, 카베진, 징코민, 기넥신, 센시아, 정맥순환개선제 소화제, 수면제, 혈액순환개선제, 혈액순환제, 정맥순환제, 혈행개선제, 간개선제, 불면증치료제, 수면유도제

II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1. 모니터링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 및 이에 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영업(등록)신고 위반 사례

-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판매
-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미등록 및 샐러드 접시(해외직구)를 구매 대행시 수입신고 미신고
-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의료기기판매업을 영업신고하지 않고 보청기(의료기기) 판매

판매금지 식품·의약품 사례

-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가정집에서 만든 수제 쿠키 판매(영업신고×)
-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센노사이드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 침출차 수입식품을 구매 대행
-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향정신성의약품(메틸페니테이트) 성분의 의료용마약류 판매

부당광고 사례

-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제품을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여 광고
- ✓ 판매업자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효과'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

(사회적 이슈) 위반 사례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개봉된 ○○○빵 판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판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항을 적시하여 자신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식품·의약품등에 대해 거래 차단 등을 요청한 경우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2.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사항

2.1.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등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 및 이에 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식품·의약품등에 관한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한다.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중지를 통지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업자가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거래를 재개시킨다. 다만, 거래 재개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 등을 통해 이의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 해당 식품등에 관한 거래를 재개시킨다.
- 해당 불법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에 문의한 후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2.2.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거래를 중지시킨 경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업자 및 이를 요청한 행정기관에게 통지한다.
-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중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이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사실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의 거래를 재개시킨다. 다만, 거래 재개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기관에서 요청한 조치에 대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문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조치를 취한다.

2.3.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의 판매업자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 등

- 판매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판매금지 식품·의약품등을 판매하기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하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그 정보의 시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받거나 비공개 또는 삭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판매업자에게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업자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 1회 위반으로도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부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I. 공통사항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나. 표시 대상

- 1) 가목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 3) 1) 및 2)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다.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2. 혼입(混入)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제1호가목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3. 무(無) 글루텐의 표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 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가.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 나.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1킬로그램당 20밀리그램 이하인 식품등

4. 고카페인 함량 표시

가. 표시대상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나. 표시방법

-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
-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다.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II.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1. 식품, 축산물

- 가. 냉동제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 나.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 다.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 라. 아스파탐(aspar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마.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 바.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 사.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 아. 삭제 <2020. 9. 9.>
- 자.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차.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 카.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2. 식품첨가물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 가.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에는 섭씨 100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 나.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 다.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4. 건강기능식품

- 가.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 나.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 다.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 라. 삭제 <2020. 9. 9.>
- 마.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의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의 용기·포장에 “이상 사례 신고는 1577-2488”의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발 행 일 2023년 2월
발 행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편집위원장 사이버조사팀장 최종동
편 집 위 원 심진봉, 주진영, 장수용, 문지혜, 유범열, 오유경,
배민석, 백승민, 허찬, 천세경, 이해원, 서지노
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전 화 043-719-1912, 1903, 1943
팩 스 043-719-1900

※ 본 가이드라인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제정·개정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